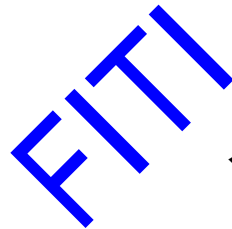


'17년 KC안전관리 부속서 개정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설명자료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섬유생활인증본부

Contents

- ▣ 개 요

-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

- 1.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개정비교

- 2.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개정비교

- ▣ “안전확인” 대상품목

-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개정비교

-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비교

- ▣ < 별첨 : 유해물질 설명_노닐페놀(NP, NPEO) >

개정

< 개요 _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 >

□ 현행 및 개정 취지

○ 개정 취지

-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최근 국내·외 이슈가 되고 있는 **노닐페놀류(NP, NPEO)**를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신설
-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섬유제품의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적 안전요건**을 신설하여 안전기준을 보완

○ 안전관리 개정 품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6/17호)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2개 품목) :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 안전확인 대상품목(4개 품목) :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학용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적용 일시

- 2017년 8월 1일 출고·통관 대상 : 합성수지 어린이용품, 학용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2018년 2월 1일 출고·통관 대상 : 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완구
- 2019년 2월 1일 출고·통관 대상 : 완구(제 4부, 유해화학물질 표4-4)

1.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개정비교

FITI

1.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① 안전요건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

구분	기존	개정	비고	
①	알러지성 염료	기준 : 사용하지 말것	기준 : 각각 50 mg/kg 이하	기준 현실화
②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	기준 : 100 mg/kg 이하 섬유부분에 적용	신규 시험항목 적용
③	가죽원단, 가죽부자재 관리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 총 납, 총 카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총 납, 총 카드뮴, 염소화페놀류, 6가크로뮴, 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유기주석 화합물(TBT)	유해물질 적용 현실화
④	섬유부위 중 제품 면적 대비 면적 5%이하, 중량 1% 미만	제외	제외 (단, 제품 착용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적용대상)	신규 예외조항
⑤	전기적 안전요건	-	2차 전지 폭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기적 안전요건 추가	신규 안전관리 요건 추가
⑥	품질표시사항	-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 추가	품질표시 항목 추가

1.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기 존

시 험 항 목		기 준 치	비 고
폼알데하이드(mg/kg)		75 이하	
유기주석화합물(mg/kg)	TBT(tributyltin)	1.0 이하	코팅,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 ※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음
아릴아민(mg/kg)		각각 30 이하	염색한 경우만 적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 이하(3종)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 적용
방염제(mg/kg)		사용하지 말 것	방염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 방염제품 표시시 국민안전처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0.1 이하	피혁 및 모피 등 가죽 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적용
납(mg/kg)		90 이하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된 부분만 적용 ※ 단 금속류의 경우 납 기준치 300 mg/kg 이하
알러지성 염료(mg/kg)		사용하지 말 것	알러지 염료로 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
pH		4.0 ~ 7.5	
니켈(Ni)의 용출량($\mu\text{g}/\text{cm}^2/\text{week}$)		0.5 이하	
코드 및 조임끈		적합	EN 14682에 적합

1.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개정

시험항목		기준치	비고
유기주석화합물(mg/kg)	TBT(tributyltin)	1.0 이하	섬유 원단에 코팅,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 ※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 이하(3종)	섬유 원단에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소재로 코팅 또는 프린팅 등의 가공 처리를 한 경우 및 합성수지 소재의 부자재에만 적용. ※ 단, 금속 및 고분자 기질 위에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0.1 이하	가죽과 모피 소재에 적용
총 납 함유량(mg/kg)		90 이하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트 및 유사코팅, 기타 재료(목재 등)부분에 적용 ※ 단, 금속류의 경우 납 기준치 300 mg/kg 이하
총 카드뮴 함유량(mg/kg)		75 이하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트 및 유사코팅, 기타 재료(목재 등)부분에 적용
알러지성 염료(mg/kg)		각각 50 이하	조성섬유는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섬유
니켈(Ni)의 용출량($\mu\text{g}/\text{cm}^2/\text{week}$)		0.5 이하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에 한하여 적용, ※ 단,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
코드 및 조임끈		적합	EN 14682에 적합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mg/kg)		100 이하	섬유원단에 한하여 적용

1.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기 존



제품분류 : 아동용 섬유제품
적용품목 : 섬유원단(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적용항목 :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개 정



제품분류 : 아동용 섬유제품
적용품목 : 섬유원단(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적용항목 :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1.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개정

<부속서 추가사항>

- 알러지성 염료 적용섬유 명확화(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섬유)
-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사용된 부분에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부속서'에 의해 안전요건 확인 해야함.
-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제품 면적대비 5% 이하, 중량대비 1% 미만인 경우에 시험제외이나, 제품착용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접촉 부위는 시험 대상분류 (단, 가죽제의 경우 가죽제품 부속서에 의해 시험적용 될지라도 5%이하와 1%미만 예외규정을 적용 하지 않음)

1.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기 존



제품분류 : 아동용 섬유제품
적용품목 : 가죽 패치원단(**코팅가죽**)
적용항목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유기주석화합물 (TBT),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3종)

개 정



제품분류 : 아동용 섬유제품
적용품목 : 가죽 패치원단(**코팅가죽**)
적용항목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유기주석화합물 (TBT), 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3종), **6가 크로뮴, 염소화페놀류, 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1.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전기적 안전요건 신설

개정(안)*

1. 섬유(가죽)제품에 포함되는 2차전지는 폭발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튬폴리머 전지로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사용되는 리튬폴리머 전지 및 셀의 안전성 (플라스틱 보강 및 케이스가 있는 상태)을 KC 62133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2. 전지가 위치한 공간은 외부의 충격, 하중, 휨 변형, 관통 등에 의한 제품 파손 및 폭발 등의 사고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 구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술한 제품설명서 (긴급대응가이드 포함)를 작성하여 주의경고표시와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침수 등에 의한 전지 폭발 및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제품이 IP(International Protection) 보호 등급 IPX7등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4. 전지를 제외한 모든 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전기 제품 및 리튬폴리머 전지가 내장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사용상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반드시 주의경고 표시 8종류 이상을 기호 및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 - 259호(2016.09.09)

1.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전기적 안전요건 신설

개정(안)*

종류	알카라인	망간	니켈 카드뮴 (Ni-Cd)	니켈수소 (Ni-MH)	리튬 이온 (Li-ion)	리튬 폴리머 (Li-Po)
전압	1.5v	1.5v	1.2v	1.2v	3.7v	3.7v
수명	1차 전지(충전할 수 없음)		2차 전지(약 500회 가량 충전 할 수 있음)			
특징	망간 전지에 비해 용량이 크고 성능이 우수함	소모 전류가 많고 저용량, 저출력으로 오늘날 많이 사용되지 않음	낮은 전압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작기 때문에 큰 전류를 필요로 하는 휴대용 기기에 적합	고용량화가 가능하고 크기가 작다. 특히 충전횟수가 많음	Li-Ion의 에너지 밀도는 적어도 Ni-Cd의 2배 이상이고 부하 전류량도 상당히 높음	리튬이온 배터리와 성능이 비슷하면서 환경과 안전성 등이 뛰어남

*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 - 259호(2016.09.09)

1.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전기적 안전요건 신설

개정(안)*

[리튬이차전지 사용 제품의 주의/경고 예시]

1. 인증을 받지 않은 전지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2. 전지 단자에 금속성 물질(휴대폰 액세서리, 동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
3. 전지를 어린 아이가 빨거나 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하세요.
4. 전지를 파손시키거나 강한 충격, 가열, 침수, 날카로운 물질로 뚫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하여 주세요.
5.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직사광선이 드는 자동차 내부 등 밀폐된 고온의 장소에 두지 마세요. 변형, 고장,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6. 임의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충전 중인 상태로 이용하지 마세요. 감전, 누전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전지의 발열, 누액, 파열, 오염 등은 기기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전지를 임의로 분해 및 개조하지 마세요.
8.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예:신발, 의류 등) 해당 부위를 구부리거나, 세탁, 외부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전지의 파손,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9.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을 유아동이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 합니다.

*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 - 259호(2016.09.09)

1.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④ 품질표시사항 (기재사항)

기 존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걸감 및 안감
 -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한다.)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개 정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걸감 및 안감
 -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한다.)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8. 제품의 사용연령

1.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④ 품질표시사항 (기재사항)

개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품질표시

①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폴리에스터 100%

②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XXX 유통

③ 제조국명 중국

④ 제조연월 또는 스타일번호

⑤ 치수 XL

⑥ 주소 00시 00구 00로 568

⑦ 전화번호 02) 123-4567

⑧ 취급상 주의사항

-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
- 4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KS K 0021)로 표시

⑨ 제품사용 연령 : 만 4세 ~ 만 5세(또는 만 4세 이상)



⚠ 주의
날카로운 끝/가장자리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경고
유리자재가 사용되어 사용상 상해의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품질표시

① 제품명(품명)

(거위/오리)솜털(다운)제품 또는 (거위/오리)깃털(페더)제품
(거위/오리)솜털(다운) 및 깃털(페더) 혼합제품

②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솜털 00%, 깃털 00%

③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XXX 유통

④ 제조국명 중국

⑤ 제조연월 또는 스타일번호

⑥ 치수 XL

⑦ 주소 00시 00구 00로 568

⑧ 전화번호 02) 123-4567

⑨ 취급상 주의사항

-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
- 4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KS K 0021)로 표시

⑩ 제품사용 연령 : 만 4세 ~ 만 5세(또는 만 4세 이상)



⚠ 주의
날카로운 끝/가장자리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경고
유리자재가 사용되어 사용상 상해의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품질표시' 문구 생략 가능

2. 어린이용 가족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개정비교

FITI

2. 어린이용 가족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① 안전요건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

구분	기존	개정	비고	
①	염소화페놀류,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는 합성가죽은 시험 생략가능	적용 예외조항 삭제	예외사항 삭제
②	6가 크로뮴 기준변경	기준 0.5 mg/kg 이하	기준 3.0 mg/kg이하	기준 완화
③	면적 5%이하, 중량 1% 미만 가죽 자재관리	제외	제외 (단, 제품 착용시 지속적 직접접촉 부위 적용)	신규 예외조항 추가
④	전기적 안전요건	-	2차 전지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전기적 안전요건 추가	신규 안전관리 요건 추가
⑤	품질표시사항	-	제품의 사용연령 표시 추가(권장)	품질표시 항목 추가

2.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기 존

시 험 항 목		유아용 가죽제품	아동용 가죽제품	비 고
폼알데하이드(mg/kg)		20 이하	75 이하	
염소화페놀류(PCP) (mg/kg)		0.5 이하	5.0 이하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는 합성가죽은 생략가능
6가 크로뮴(mg/kg)		0.5 이하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0.1 이하		
아릴아민(mg/kg)		30 이하		안료 또는 염료 등을 사용하여 색이 발현된 경우에만 적용
유기주석화합물 (mg/kg)	DBT(dibutyltin)	1.0 이하	-	코팅,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
	TBT(tributyltin)	0.5 이하	1.0 이하	※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음
유해원소 함유량 (mg/kg)	총 납	300 이하		금속, 고무,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거나 코팅, 프린팅 된 경우 적용(단,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총 카드뮴	75 이하		금속, 고무,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거나 코팅, 프린팅 된 경우 적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 이하		합성수지제, 섬유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적용 ※ 경구용이 아닌 제품의 경우 3종(DEHP, DBP, BBP) 적용 ※ 경구용인 제품인 경우 6종(DEHP, DBP, BBP, DINP, DIDP, DNOP) 적용
니켈(Ni)의 용출량 ($\mu\text{g}/\text{cm}^2/\text{week}$)		0.5 이하		

2. 어린이용 가족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개정

시험항목		유아용 가족제품	아동용 가족제품	비고
폼알데하이드(mg/kg)		20 이하	75 이하	가족 또는 모피부분에 한하여 적용 (※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은 합성가죽은 생략가능' 문구가 삭제 됨.)
염소화페놀류(PCP) (mg/kg)		0.5 이하	5.0 이하	
6가 크로뮴 (mg/kg)		3.0 이하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0.1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mg/kg)	DBT(dibutyltin)	1.0 이하	-	가족 원단에 코팅,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 ※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음
	TBT(tributyltin)	0.5 이하	1.0 이하	
유해원소 함유량 (mg/kg)	총 납	300 이하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트 및 유사코팅, 기타 재료(목재 등)부 분에 적용(단,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총 카드뮴	75 이하		
니켈(Ni)의 용출량 ($\mu\text{g}/\text{cm}^2/\text{week}$)		0.5 이하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 는 금속에 한하여 적용. (단,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

2.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개정

<부속서 추가사항>

- 제품을 구성하는 가죽 부위 중 제품 면적대비 5% 이하, 중량대비 1% 미만인 경우에 시험제외
이나,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 부위는 시험 대상분류
(단, 섬유제의 경우 섬유제품 부속서에 의해 시험적용 될지라도 5%이하와 1% 미만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
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 할 수 있다

2. 어린이용 가족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전기적 안전요건 신설

개정(안)*

1. 섬유(가족)제품에 포함되는 2차전지는 폭발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튬폴리머 전지로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사용되는 리튬폴리머 전지 및 셀의 안전성 (플라스틱 보강 및 케이스가 있는 상태)을 KC 62133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2. 전지가 위치한 공간은 외부의 충격, 하중, 힘 변형, 관통 등에 의한 제품 파손 및 폭발 등의 사고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 구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술한 제품설명서 (긴급대응가이드 포함)를 작성하여 주의경고표시와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침수 등에 의한 전지 폭발 및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제품이 IP(International Protection) 보호 등급 IPX7등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4. 전지를 제외한 모든 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전기 제품 및 리튬폴리머 전지가 내장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사용상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반드시 주의경고 표시 8종류 이상을 기호 및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 - 259호(2016.09.09)

2. 어린이용 가족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전기적 안전요건 신설

개정(안)

[리튬이차전지 사용 제품의 주의/경고 예시]

1. 인증을 받지 않은 전지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2. 전지 단자에 금속성 물질(휴대폰 액세서리, 동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
3. 전지를 어린 아이가 빨거나 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하세요.
4. 전지를 파손시키거나 강한 충격, 가열, 침수, 날카로운 물질로 뚫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하여 주세요.
5.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직사광선이 드는 자동차 내부 등 밀폐된 고온의 장소에 두지 마세요. 변형, 고장,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6. 임의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충전 중인 상태로 이용하지 마세요. 감전, 누전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전지의 발열, 누액, 파열, 오염 등은 기기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전지를 임의로 분해 및 개조하지 마세요.
8.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의(예:신발, 의류 등) 해당 부위를 구부리거나, 세탁, 외부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전지의 파손,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9.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을 유아동이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 합니다.

2. 어린이용 가족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④ 품질표시사항 (기재사항)

기 존

1. 품명
2. 재료의 종류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제조국명
6. 제조연월
7. 주소 및 전화번호
8. 치수 (권장)
9. 취급상 주의사항

FITI

개 정

1. 품명
2. 재료의 종류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제조국명
6. 제조연월
7. 주소 및 전화번호
8. 치수(권장)
9. 취급상 주의사항
10. 제품의 사용 연령(권장)

2.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④ 품질표시사항 (기재사항)

개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품질표시

- ① 품명 "가죽제품"
- ② 재료의 종류 천연가죽(양)
 - 의류 : 겹감 및 안감
 - 신발류 : 갑피,창
- ③ 치수 XL
- ④ 제조자명 XXX유통
- ⑤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OOO INT'S
- ⑥ 제조국명 중국
- ⑦ 제조연월 2015. 09
- ⑧ 주소 00시 00구 00로 568
- ⑨ 전화번호 02) 123-4567
- ⑩ 취급상 주의사항
- ⑪ 제품의 사용연령(권장) : 만 4세 ~ 만 5세(또는 만 4세 이상)



⚠ 주의

날카로운 끝/가장자리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경고

유리자재가 사용되어 사용상 상해의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품질표시' 문구 생략 가능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개정비교

FITI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① 안전요건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

구분	기존	개정	비고	
①	알러지성 염료 적용	기준 : 사용하지 말것	기준 : 각각 50 mg/kg 이하	기준 현실화
②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	기준 : 100 mg/kg 이하 섬유부분에 적용	신규시험항목 적용
③	가죽원단, 가죽부자재 관리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6종) 총 납, 총 카드뮴 유해원소용출(8종)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 총 납, 총 카드뮴, 유해원소용출(8종), 염소화페놀류, 6가크로뮴, 아릴아민, 유기주석 화합물(TBT), 폼알데하이드	시험항목 확대
④	면적 5%이하, 중량 1% 미만 섬유 자재관리	제외	제외 (단, 제품 착용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 하는 부위는 적용대상)	신규 예외조항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① 안전요건의 주요 개정내용

개 정

구 분	기 존	개 정	비 고
⑤	모델의 구분	외의류. 중의류 , 내의류, 침구류 신발류, 양말류,	모델구분의 현실화
⑥	전기적 안전요건	-	신규 안전관리 요건 추가
⑦	품질표시사항	FITI -	품질표시 항목 추가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모델구분의 변경

기 존

구 분	섬유제품 종류	비 고
외의류	티셔츠, 바지, 원피스, 상하복, 우주복, 스커트, 점퍼, 조끼, 바바리, 가디건, 코트, 톱바, 남방	성인/아동에서 구분하는 [외의류+중의류] 제품분류를 [외의류]로 통합관리
내의류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쫄바지, 팬티스타킹	
침구류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	
신발류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등(가죽/모피제품 제외)	
양말류	양말, 타이즈, 발 토시, 스타킹	
장갑류	장갑, 팔토시	
모자류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가방류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신생아용품	기저귀카바, 천기저귀, 손수건, 손발싸개, 속싸보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모델구분의 변경

개정

구분	섬유제품 종류	비고
외의류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조끼, 톱바, 우주복, 가디건, 솔,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미술가운, 넥타이, 벨트류, 멜빵	
중의류	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방한대	[외의류 + 중의류] 통합관리에서 [외의류], [중의류]로 각각 분리관리
내의류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줄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	
침구류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매트류, 요,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카페트,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모델구분의 변경

개정

구분	섬유제품 종류	비고
신발류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보행기신발,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가죽/모피제품 제외)	
양말류	양말, 타이즈, 발 토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보호대	
장갑류	장갑, 팔토시	
모자류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스카프, 스카프빔	
가방류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	
신생아용품	기저귀커버,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침받이, 배냇저고리, 싸개류, 기저귀밴드, 기저귀매트, 풋머프, 욕조, 칫솔장갑, 목받이, 욕조그물, 가리개, 목욕쿠션, 목욕등받이, 목욕장갑, 어깨패드, 샴푸캡, 헹시트, 노리개젓꼭지보관케이스, 모기장	
기타류	구분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류로 구분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기 존

시 험 항 목		기 준 치	비 고
폼알데하이드(mg/kg)		2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mg/kg)	DBT(dibutyltin)	1.0 이하	코팅,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 ※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음
	TBT(tributyltin)	0.5 이하	
아릴아민(mg/kg)		각각 30 이하	염색한 경우만 적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 이하(6종)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 적용
방염제(mg/kg)		사용하지 말 것	방염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 방염제품 표시시 국민안전처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0.1 이하	가죽 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적용
납(mg/kg)		30 이하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된 부분만 적용 ※ 단 금속류의 경우 납 기준치 300 mg/kg 이하
알러지성 염료(mg/kg)		사용하지 말 것	알러지 염료로 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
pH		4.0 ~ 7.5	
니켈(Ni)의 용출량($\mu\text{g}/\text{cm}^2/\text{week}$)		0.5 이하	
코드 및 조임끈		적합	EN 14682에 적합
장식용 작은 부품		탈락하지 않을 것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개정

시험항목		기준치	비고
폼알데하이드(mg/kg)		20 이하	섬유부분에 한하여 적용
유기주석화합물 (mg/kg)	DBT(dibutyltin)	1.0 이하	섬유 원단에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
	TBT(tributyltin)	0.5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 이하(6종)	섬유 원단에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로 코팅 또는 프린팅 등의 가공 처리를 한 경우 및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의 부자재에만 적용 ※ 단, 금속 및 고분자 기질 위에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0.1 이하	가죽과 모피 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적용
총 납(mg/kg)		90 이하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트 및 유사코팅, 기타 재료(목재 등)부분에 적용하며, 섬유 원단에는 적용하지 않음. ※ 단 금속류의 경우 기준치 300 mg/kg 이하
총 카드뮴(mg/kg)		75 이하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트 및 유사코팅, 기타 재료(목재 등)부분에 적용하며, 섬유 원단에는 적용하지 않음
알러지성 염료(mg/kg)		각각 50 이하	적용되는 조성섬유는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이며, 염색한 섬유부분에 한하여 적용
니켈(Ni)의 용출량($\mu\text{g}/\text{cm}^2/\text{week}$)		0.5 이하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에 한하여 적용. ※ 단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mg/kg)		100 이하	섬유원단에 한하여 적용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기 존



제품분류 : 유아용 섬유제품
적용품목 : 섬유원단(폴리에스터, 나일론, 면)
적용항목 :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개 정



제품분류 : 유아용 섬유제품
적용품목 : 섬유원단(폴리에스터, 나일론, 면)
적용항목 :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개정

<부속서 추가사항>

-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사용된 부분에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부속서'에 의해 안전요건 확인 해야함.
-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제품 면적대비 5% 이하, 중량대비 1% 미만인 경우에 시험 제외이나, 제품착용시 신체 지속적 접촉 부위는 시험 대상분류 (단, 섬유의 경우 섬유제품 부속서에 의해 시험적용 될지라도 5%이하, 1% 미만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FITI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기 존



제품분류 : 유아용 섬유제품
적용품목 : 가죽 패치원단(~~인조가죽~~, 코팅가죽)
적용항목 : 디메틸푸마레이트, 납, 카드뮴,
유기주석화합물(TB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6종)

개 정



제품분류 : 유아용 섬유제품
적용품목 : 가죽 패치원단(~~인조가죽~~, 코팅가죽)
적용항목 : 디메틸푸마레이트, 총 납, 총 카드뮴,
유기주석화합물(TB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6종),
6가 크로뮴, 염소화페놀류, 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④ 동일모델 구분

기 존

- ▶ 동일모델의 구분 (조건 ① 충족시 제품간 필증번호 공유)
 - 조건① **구분별**, 섬유의 조성별, 동일 제조업체, 동일 제조국

구분	종류
외의류	티셔츠, 바지, 원피스, 상하복, 우주복, 스커트, 점퍼, 조끼, 바바리, 가디건, 코트, 톱바, 남방
내의류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쫄바지, 팬티스타킹
침구류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
신발류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가죽 제품류에서 분리))
양말류	양말, 타이즈, 발 토시, 스타킹
장갑류	장갑, 팔토시
모자류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가방류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신생아용품	기저귀카바,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속싸보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④ 동일모델 구분

개정

- ▶ 동일모델의 구분 (조건 ① 충족시 제품간 필증번호 공유)
 - 조건① **종류별**, 조성섬유별, 동일 제조업체, 동일 제조국

구분	종류
외의류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조끼, 톱바, 우주복, 가디건, 숄, 망토, 한복, 우의 등
중의류	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방한대
내의류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쫄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등
침구류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매트류, 요 등
신발류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보행기신발 등(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가죽 제품류 에서 관리))
양말류	양말, 타이즈, 발도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등
장갑류	장갑, 팔토시
모자류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빔 등
가방류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신생아용품	기저귀카바,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속싸보 등

<표1. 유아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④ 동일모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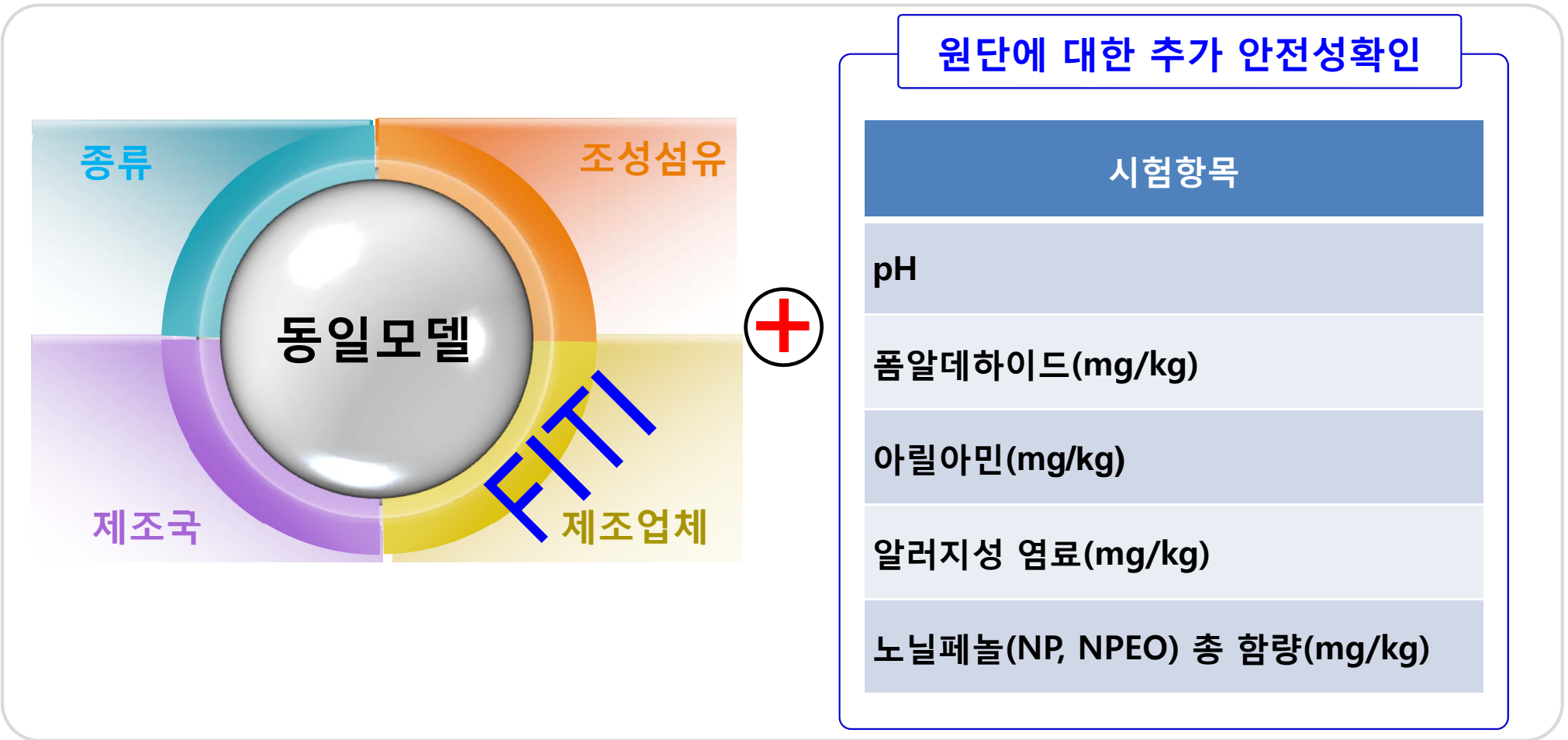
개정

- ▶ 동일모델의 구분 (조건 ①,② 모두 충족시 제품간 신고확인증번호 공유가능)
 - 조건① 종류별, 조성섬유별, 동일 제조업체, 동일 제조국
 - 조건② 종류와 조성섬유가 동일 하더라도 섬유 원단의 색상이 다른 경우에는 유해물질 안전요건에(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해당시),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부합하는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일모델로 인정한다.
- 비교 표 1에 따라 종류가 다르더라도 구분, 조성섬유, 색상이 같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및 가공된 원단을 사용하였을 경우는 동일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④ 동일모델 구분

개정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⑤ 전기적 안전요건 신설

개정(안)*

1. 섬유(가죽)제품에 포함되는 2차전지는 폭발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튬폴리머 전지로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사용되는 리튬폴리머 전지 및 셀의 안전성 (플라스틱 보강 및 케이스가 있는 상태)을 KC 62133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2. 전지가 위치한 공간은 외부의 충격, 하중, 휨 변형, 관통 등에 의한 제품 파손 및 폭발 등의 사고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 구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술한 제품설명서 (긴급대응가이드 포함)를 작성하여 주의경고표시와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침수 등에 의한 전지 폭발 및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제품이 IP(International Protection) 보호 등급 IPX7등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4. 전지를 제외한 모든 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전기 제품 및 리튬폴리머 전지가 내장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사용상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반드시 주의경고 표시 8종류 이상을 기호 및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 - 259호(2016.09.09)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⑤ 전기적 안전요건 신설

개정(안)

[리튬이차전지 사용 제품의 주의/경고 예시]

1. 인증을 받지 않은 전지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2. 전지 단자에 금속성 물질(휴대폰 액세서리, 동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
3. 전지를 어린 아이가 빨거나 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하세요.
4. 전지를 파손시키거나 강한 충격, 가열, 침수, 날카로운 물질로 뚫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하여 주세요.
5.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직사광선이 드는 자동차 내부 등 밀폐된 고온의 장소에 두지 마세요. 변형, 고장,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6. 임의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충전 중인 상태로 이용하지 마세요. 감전, 누전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전지의 발열, 누액, 파열, 오염 등은 기기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전지를 임의로 분해 및 개조하지 마세요.
8.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의(예:신발, 의류 등) 해당 부위를 구부리거나, 세탁, 외부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전지의 파손,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9.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을 유아동이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 합니다.

*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 - 259호(2016.09.09)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⑥ 품질표시사항 (기재사항)

기 존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걸감 및 안감
 -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한다.)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개 정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걸감 및 안감
 -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한다.)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8. 제품의 사용연령

3.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관리 부속서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⑥ 품질표시사항 (기재사항)

개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품질표시

①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폴리에스터 100%

②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XXX 유통

③ 제조국명 중국

④ 제조연월 또는 스타일번호

⑤ 치수 XL

⑥ 주소 00시 00구 00로 568

⑦ 전화번호 02) 123-4567

⑧ 취급상 주의사항

-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 방법 등을 포함

4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KS K 0021)로 표시

⑨ 제품사용 연령 : 만 36개월 미만(또는 만 2세 이상)



⚠ 주의
날카로운 끝/가장자리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경고
작은부품이 탈락되어 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품질표시

① 제품명(품명)

(거위/오리)솜털(다운)제품 또는 (거위/오리)깃털(페더)제품
(거위/오리)솜털(다운) 및 깃털(페더) 혼합제품

②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솜털 00%, 깃털 00%

③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XXX 유통

④ 제조국명 중국

⑤ 제조연월 또는 스타일번호

⑥ 치수 XL

⑦ 주소 00시 00구 00로 568

⑧ 전화번호 02) 123-4567

⑨ 취급상 주의사항

-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 방법 등을 포함

4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KS K 0021)로 표시

⑩ 제품사용 연령 : 만 36개월 미만 (또는 만 2세 이상)



⚠ 주의
날카로운 끝/가장자리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경고
작은부품이 탈락되어 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품질표시' 문구 생략 가능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비교

FITI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① 안전요건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

구분	기존	개정	비고
① 안전기준 적용 우선순위	개별안전기준부속서 < 공통안전기준	개별안전기준 부속서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적용 우선순위 변경
②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 (아릴아민은 정상 사용시 피부에 접촉하는 경 우에 한하여 염색한 섬유부분에만 적용)	신규 시험항목 적용
③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전연령 대상, 96개월 이상 경고표시 있을시 시험제외	전연령 대상, 96개월 이상 어린이제품은 시험제외	신규 예외조항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① 안전요건의 주요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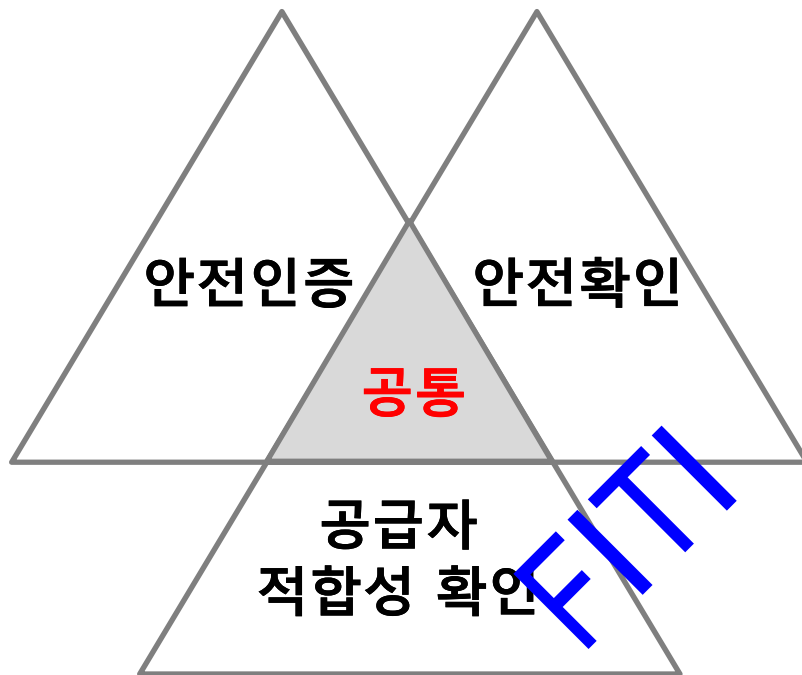
개정

구분	기존	개정	비고
④ 유리	-	36개월 미만 어린이제품 사용불가, 36개월 이상 어린이제품 '경고' 표시 후 사용	신규 관리항목 적용
⑤ 전기적 안전요건	-	리튬 2차 전지(니켈계 전기 제외)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전기적 안전요건 추가	신규 안전관리 요건 추가
⑥ 품질표시사항	-	착용 또는 탑승용 제품에 대한 크기/체중의 한계 기재(착용 및 탑승용 제품)	품질표시 항목 추가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안전관리기준 우선순위

공통안전기준과 개별안전기준의 관계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개별안전기준



공통안전기준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안전관리기준 우선순위

기 존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적용

개 정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적용하고,
동일한 항목에 대해 개별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개별안전기준을 따름

< 예시 > 아동용 섬유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 VS.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

▶ 기존 - 관리방법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 진행

관리방법②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 진행 후 주의경고 문구 삽입

※ 경고문구 :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어린이의 얼굴과 입에 닿지 않도록 할 것”

▶ 변경 - 관리방법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 진행

→ 개별안전기준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으로 관리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기 존

유해물질명		안전기준	비고
유해원소 용출 (mg/kg)	안티모니 (Sb)	60 이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제품 또는 36개월 미만 사용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도장면(코팅 포함), 합성수지제, 종이제에 적용
	비소 (As)	25 이하	
	바륨 (Ba)	1 000 이하	
	카드뮴 (Cd)	75 이하	
	크로뮴 (Cr)	60 이하	
	납 (Pb)	90 이하	
	수은 (Hg)	60 이하	
	셀레늄 (Se)	500 이하	
유해원소 함유량 (mg/kg)	총 납 (Pb)	90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mg/kg 이하 적용 ※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 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않음
	총 카드뮴 (Cd)	75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DHEP	총합 0.1 이하	합성수지제, 섬유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적용 ※ 경구용이 아닌 어린이제품의 경우 3종(DEHP, DBP, BBP) 적용 ※ 경구용인 제품인 경우 6종(DEHP, DBP, BBP, DINP, DIDP, DNOP) 적용 ※ 경구용이 아닌 어린이제품 중 6종의 총합이 0.1% 초과한 제품에는 경고 표시
	DBP		
	BBP		
	DINP		
	DIDP		
	DNOP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②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변경

개정

유해물질명	안전기준	비고
pH	4.0 ~ 7.5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경우로, 정상사용시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아릴아민은 염색한 경우에 적용)
폼알데하이드 (mg/kg)	75 이하	
아릴아민 (mg/kg)	각각 30 이하	

FITI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물리적 안전요건의 변경

○ 날카로운 끝 / 가장자리

기 존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가장자리 을 가지는 어린이제품은 모두 적용.

단, 96개월 이상 어린이 제품에 날카로운 끝/가장자리에 대한 경고표시가 있을 경우 시험 제외.

개 정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가장자리를 가지는 어린이제품은 모두 적용.

단, 96개월 이상 어린이제품은 시험대상에서 제외함.

FITI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물리적 안전요건의 변경

기 존



제품분류 : 96개월 미만 유아/아동용 제품
적용품목 : 의류부속품
적용항목 : 날카로운 끝, 가장자리

제품분류 : 96개월 이상 아동용 제품
적용품목 : 의류부속품
적용항목 : 날카로운 끝, 가장자리
(또는) **경고표시 대체**

개 정



제품분류 : 96개월 미만 유아/아동용 제품
적용품목 : 의류부속품
적용항목 : 날카로운 끝, 가장자리

제품분류 : 96개월 이상 아동용 제품
적용품목 : 의류부속품
적용항목 : 시험대상에서 제외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물리적 안전요건의 변경

○ 유리

기 존

해당없음

개 정

접근 가능한 유리는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사용할 제품에 있어서는 안됨.
접근 가능한 유리는 36개월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되면 경고 표시를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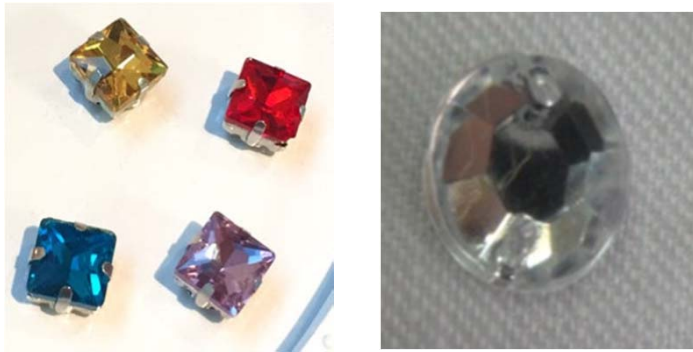
※ “유리”란 단단하고 깨지지 쉬운 비정질 재료, 소다와 석회를 함유하는 용해성 규소 및 규산염 등의 구성물을 용융시켜 제조된 것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③ 물리적 안전요건의 변경

기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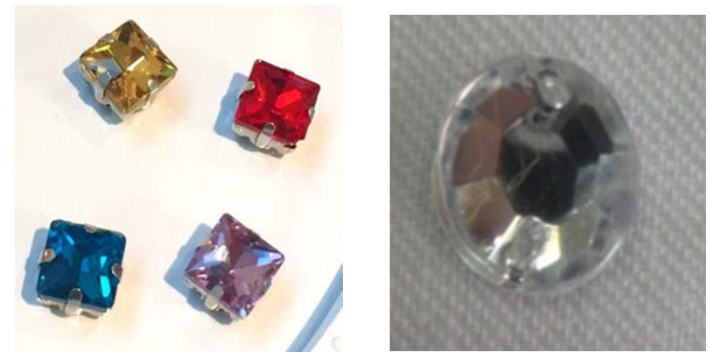


제품분류 : -
적용품목 : -
적용항목 : -

제품분류 : -
적용품목 : -
적용항목 : -

FITI

개 정



제품분류 : 36개월 미만 유아용 제품
적용품목 : 의류부속품(유리)
적용항목 : **사용불가**

제품분류 : 36개월 이상 아동용 제품
적용품목 : 의류부속품(유리)
적용항목 : **경고문구 표시**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④ 전기적 안전요건의 신설

개정

<전기적 안전요건 관리>

1. 어린이제품에 포함되는 리튬 2차전지(니켈계 전지는 제외)는 독립적인 제어 및 보호장치를 가져야함.
2. 이에 대한 적합함을 입증해주는 서류(국제공인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안전 확인 신고서, 자체 시험성적서 등) 및 사용 충전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비치하여야함.
3. 전지는 또한 적절한 주의문구와 함께 표시하여야 함.

<안전요건 관리>

1. 비산성 전해액을 갖는 밀폐2차전지의 사용 및 특히 남용 시, 위험할 수 있으며 피해를 줄 수 있다.
2. 전지 제조자는 장비 제조자와 직접 판매의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위험을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보를 부록 D 및 부록 E와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 비산성 전해액을 갖는 밀폐2차전지가 포함된 어린이제품 제조자와 전지조립자를 위한 권고 사항 (부록 D참조)
 - 비산성 전해액을 갖는 밀폐2차전지가 포함된 어린이제품 사용·보호자를 위한 권고 사항 (부록 E참조)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④ 전기적 안전요건의 신설

개정

<전지표시>

- ▶ 전지는 전지 조립에 사용한 단전지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KC 62133 10.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 아래의 사항은 전지 또는 제품의 설명서 등에 표시되어야 함.
- ▶ 전지는 또한 적절한 주의문구와 함께 표시하여야 함.

[전지의 표시사항]

- | | |
|--------------------------------|----------------------------|
| ① 충전 가능한 리튬 또는 리튬이온 | ⑤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회사명 또는 식별 표시 |
| ② 전지 형식 (N1A1A2A3/N2/N3/N4-N5) | ⑥ 모델번호 |
| ③ 극성 | ⑦ 정격 용량 |
| ④ 제조일 (코드 표시 가능) | ⑧ 공칭 전압 |

4.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⑤ 품질표시사항 (기재사항)

기 존

1.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조년월
4. 제조국
5. 사용연령
6. 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
7.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문구(권장)

개 정

1.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조년월
4. 제조국(대외무역법 원산지 규정 따름)
5.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 연령)
6. 크기 및 체중의 한계(착용 및 탑승용 제품)
7. 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
8.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문구(권장)

※ "KC마크는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문구는 12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해당제품에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함.

< 별첨 _ 유해물질 설명자료 >

【 노닐페놀(Nonylphenols),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Nonylphenoethoxylates) 】

▣ 등장배경

- ▶ '14년 8월경 前 국회의원 전순옥 의원 / 녹색소비자연대가 유아동복 45개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 실시하였고, 유럽(OEKO-TEX)와 공중위생관리법 세척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닐페놀(NP/NPEO)이 검출되어 이후 사용제한 물질로 법안 발의함.
- ▶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용 세척제로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공업용 세척제로 사용되고 있어 섬유 가공 과정에서 의류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여 관리 대상으로 분류.
- ▶ 노닐페놀은 2001년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질로 지정됨.

< 별첨 _ 유해물질 설명자료 >

【 노닐페놀(Nonylphenols),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Nonylphenoethoxylates) 】

▣ **주요 활용대상** : 계면활성제, 에폭시 수지, 페인트 첨가제, 항산화제 등

- ▶ 낮은 가격에도 세척효과가 좋아 계면활성제로 널리 이용되는 특성을 볼 때, 원단 수세공정시 이용 될 가능성이 높음

▣ **물질 유해성** :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로 분류

- ▶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하여 남성 발기부전을 일으키거나 무정자증을 유발해 불임의 원인이 되고 여성에게는 기형아, 성조숙증 등을 일으킴.
- ▶ 가열된 증기형태로 흡입될 경우 호흡기 자극, 피부노출시 화상 가능성 있음.



FITI시험연구원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시험 검사기관 지정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166호 / 2015. 6. 4 시행)

- 0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검사업무가 가능합니다.
- 02** FITI시험연구원은 시험, 검사 및 신고확인증 번호발급 업무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해드립니다.
- 0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립니다.

인증구분	품 목	담당자 연락처
안전인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이정상 팀장 02-3299-8061 jslee@fiti.re.kr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1부만 해당)	박호동 과장 02-3299-8063 hdpark@fiti.re.kr
	완구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조한성 주임 02-3299-8065 chans@fiti.re.kr
	학용품	
	보행기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공급자 적합성확인	아동용 섬유제품	임준희 과장 02-2038-8489 jh.lim@fiti.re.kr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윤혜연 차장 02-3299-8009 hyeyy@fiti.re.kr
	어린이용 연봉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가구	강상욱 과장 02-6931-8461 swkang@fiti.re.kr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 예시 : 어린이용 서적, 미술용품, 어린이용 운동용품, 악기류, 팬시 용품, 위생용품, 게임기류, 기능성 편리용품, 기타 신제품 등	

- FITI시험연구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안전인증기관 지정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 FITI시험연구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1부만 해당), 완구,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50
YEARS
1965-2015

50년간 베풀어 주신 고객의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파트너로서, **고객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CHALLENGE NEXT 50

패션 의류 / 생활 용품 / 산업 제품 / 환경 분석 / 소비자 안전

